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3
----------	--------

제출일자 : 1999. 5 . 2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내용삭제
-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청취소시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수 있도록 규정 완화.

주요골자

- 제6조 조제목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 제6조 본문
 - 현 행 :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함.
 - 개정안 :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조례·규칙·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 【'99.5.8】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제목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을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본문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6조(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p>